

# 더샵 시에르네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각 기관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 사업주체에 통지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청약이 불가 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등·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간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주체는 각 기관에서 최종 통지된 대상자와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대상자가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한 청약신청을 할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등·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등 안내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대상 및 공급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최고 21층 13개동 공동주택 788세대  
일반분양 231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20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 총 231세대 중 20세대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74.9592	74	74.9469	28.4892	103.4361	55.9331	159.3691	39.3331	39
	75.8636	75	75.9849	29.8279	105.8128	56.7077	162.5205	39.8779	10
	84.9814A	84A	84.9630	23.4718	108.4348	63.4081	171.8429	44.5897	55
	84.8510B	84B	84.9650	23.7434	108.7084	63.4096	172.1180	44.5908	38
	84.9193C	84C	84.8968	24.4690	109.3658	63.3587	172.7245	44.5550	47
	128.9878	128	128.9154	26.8593	155.7747	96.2099	251.9846	67.6565	42
합계									231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배정 세대

구분	74		75		84A		84B		84C		128		합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국가유공자등	1	5	0	0	1	5	1	5	1	5	0	0	4	20
장기복무세대군인	1	5	0	0	1	5	1	5	1	5	0	0	4	20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0	0	0	0	1	5	0	0	0	0	0	0	1	25
장애인(울산시)	1	5	0	0	1	5	1	5	1	5	0	0	4	20
중소기업근로자	1	5	1	5	2	10	1	5	2	10	0	0	7	35
합계	4	20	1	5	6	30	4	20	5	25	0	0	20	1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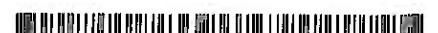
■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24.(목)	일간신문 / 청약홈 / 당사 홈페이지 - 청약홈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당사 홈페이지 :
건본주택 개관일	2024.10.25.(금)	건본주택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5-5번지
특별공급접수일자	2024.11.04.(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당첨자 발표	2024.11.12.(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서류접수	2024.11.16.(토) ~ 2024.11.22.(금)	당사 건본주택
계약체결	2024.11.25.(월) ~ 2024.11.27.(수)	당사 건본주택 (10시 ~ 16시)

- \* 상기 공급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li> </ul>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무주택  
요건

청약  
통장  
자격  
요건

대상자

추천기  
관

당첨자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